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699호
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(변경)

1. 투자선도지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가. 명　칭 :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

나. 위　치 :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35-1번지 일원

다. 면　적 : 539,943㎡

2.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, 시행기간(변경)

가. 지정목적 및 필요성

○ 포도와 와인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인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자원과 생산, 소비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 활성화의 성장 모델 제시

○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농촌관광지를 조성하여 과수산업을 육성·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

나. 시행기간 : (당초) 2014년~2023년 → **(변경) 2014년~2024년**

3.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4. 투자대상, 투자규모,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5.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6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7.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8.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9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(변경없음)

○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

10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(043-220-4114) 및 영동군 관광과(043-740-3642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.